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

1. 상호(명칭): 두한에너지2

2. 성명(대표자): (주)두한 (생년월일: 1913년 46월 11일)

3. 주소(사업장소재지):

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서동대로 5623

(전화번호: 0316712297)

4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

가.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: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석유류저장시설

나.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장용량: 저장시설: 총 5 기 총용량: 250,000.00 &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 :

5.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내역

가. 방지시설의 종류 : 누유감지기,도장법

나. 설치내용: 이중벽탱크.FRB 3mm 피복.누유감지센서설치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 이중벽탱크, FRB 3mm피복, 누유감지센서

6.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

[□] 해당 [□] 해당하지 않음 [■] 확인을 신청하지 않음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(변경)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08년 10월 15일

경기도 안성사장이라

<변경 사항>

일 자	내 용	확 인	
2010-03-03	지위승계에 따른 의제처리 상호 및 대표자 변경[(주)두한에 너지2 대표이사 -> 두한에너지2 손근택]	김보경	
2010-04-21	저장시설 변경 : 휘발유 50,000ℓ×1기→경유 50,000ℓ×1 기	변신숙	
2011-07-29	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변경 : 손근택→(주)두한	변신숙	

<참고사항>

일	자	내 용	확	인

<저장시설>

시설명	오염물질	용량(단위)	수량(기)	완공일	시설형태
석유류저장시설	휘발유	50,000.00 l	1	2008/10/14	지하저장탱크
석유류저장시설	휘발유	50,000.00 ℓ	1	2008/10/14	지하저장탱크
석유류저장시설	경유	50,000.00 ℓ	1	2008/10/14	지하저장탱크
석유류저장시설	경유	50,000.00 ℓ	1	2008/10/14	지하저장탱크
석유류저장시설	등유	50,000.00 ℓ	1	2008/10/14	지하저장탱크

<행정처분사항>

일	자	내 용	확	인